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70호

## 창원시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

「창원시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1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**1. 자치법규명**

**「창원시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」**

**2. 제정이유**

○ 3·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지역에서 독재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, 4·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.

○ 3·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·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3·15의거에 대한 역사적·국가적 의미를 부여하고, 3·15의거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3 · 15의거의 기념과 그 정신 계승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3 · 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3 · 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3 · 15의거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3 · 15의거 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~제11조)

바.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사.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
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

## (남재욱 의원 대표발의)

| 의안 번호 | 319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0.

발 의 의 원 : 남재욱・강창석・구점득・권성현・김경수
김경희・김남수・김미나・김수혜・김영록
김우진・김헌일・문순규・박강우・박선애
박해정・서명일・서영권・성보빈・안상우
이종화・최정훈・한상석・홍용채 의원(24명)

찬 성 의 원 : 손태화・이원주・정길상・최은하・
황점복 의원 (5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3·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지역에서 독재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, 4·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.

○ 3·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·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3·15의거에 대한 역사적·국가적 의미를 부여하고, 3·15의거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3·15의거의 기념과 그 정신 계승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3·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3·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3·15의거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3·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7조~제11조)

바.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사.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창원시 조례 제 호

# 창원시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마산의 3·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3·15의거”란 「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.
2. “3·15의거 관련 단체”란 3·15의거 희생자 및 유족단체 또는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3·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는 3·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기념사업)** 시장은 3·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
2. 3·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및 교육·문화 사업

3. 3·15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·출판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3·15의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3·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)** 시장은 3·15의거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·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3·15의거 기념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3·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3·15의거 정신 계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2. 3·15의거 관련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

3. 학계, 문화·예술계, 언론계 등 3·15의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9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3·15의거 정신 계승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**제11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지원단체 조직의 제한)** 누구든지 3·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3조(포상)** 시장은 3·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

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참고 관계 법령

### ■ 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"3·15의거"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.

**제8조(기념사업)** 국가는 3·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재정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·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원단체조직의 제한)** 누구든지 3·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■ 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8조(재정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3·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
2. 3·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
3. 3·15의거에 관한 교육·학술 활동 지원
4. 그 밖에 3·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

### 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"민주화운동"이란 2·28대구민주화운동, 3·8대전민주의거, 3·15의거, 4·19혁명, 부·마항쟁, 6·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.